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(업윤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변호 //05

발의연월일: 2015. 4. 30.

발의의원 : 엄윤탁 의원, 신영희 의원

(등 찬성의원 8인)

### 1. 제안이유

○ 2001년 제정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 규정」을 군의회 위상에 맞게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」로 격 상시켜 보다 명확하게 포상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포상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8조)
- 다. 포상의 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라.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마.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- 바. 이중포상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사. 포상대장 등재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3. **제정조례안**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22조

달성군 조례 제

호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"군의회"라 한다.)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(이하 "지역사회"라 한다)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(단체), 개인(외국인 포함), 공무원을 대상으로한다.
- 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.
- 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(패), 상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.
- 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  - 1.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  - 2.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
  - 3.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

- 제6조(감사장, 패) 감사장(패)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(단체)에 수여한다.
- 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  - 1. 군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그행사에 크게 기여한 자
  - 2. 체육대회, 경연대회,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
- 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포상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.
  -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는 상금, 그 밖의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.
- 제9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군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의회사무과 직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사무과장이 된다.
  - 1. 군의회 의원
  - 2. 각급 기관·단체장
  -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 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포상대상자의 선정 등) ①포상대상자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감사장(패)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.
  -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공적심사를 위하여 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  - ②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,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, 군의회사무과장 및 군의회 전문위원 1인이 위원이 된다.
  -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군의회사무과 의정 담당이 그 직을 행한다.
  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  -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  - ⑥위원회가 심사,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이중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- 제14조(포상대장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 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\_\_\_\_\_ 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제 호

표 창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표 창 문)

년 월 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인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제 호

감 사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인)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제 호

상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상 문)

년 월 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인)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# 공 적 조 서

성 명	(한자)	생년월일				
주 소						
소속		직위(직급)				
근무기간 (수공기간)	년 월 ( 년 월)	과거포상				
추천훈격		추천순위				
공적요지(공	-적사실별, 개조식으로 직	· 남성)			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• •						

조사자 직위(급)

<u>()</u>

<sup>※</sup>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(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)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.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# 공 적 심 사 의 결 서

### ○ 심사대상자

연번		표창대상자		22.2.2.2	
	직위 또는 직명	소속 또는 주소	성 명	공적개요	심사결과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」제11조(공적심사) 및 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)에 따라 위 심사결과와 같이 표창대상자로 선정 의결합니다.

년 월 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

위원장	(인)
위원(의원)	(인)
위원(의원)	(인)
위원(사무과장)	(인)
위원(전문위원)	(인)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

### 【별지 제6호 서식】

# 포 상 대 장

	포상	포상	포상	피	보	상	자	포상하게	기념품	
호수	년월일	종별	기관	직위 또는 직명	소속 또는 주소	성별	성명	된 공적개요	또는 부상	참고

#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 □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 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엄 윤 탁	of Eth	0 5
신 영 희	전에러	S